

Contents

01 법률칼럼

-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받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정정태 변호사)

05 열려라 중국

- 부동산 외상투자 시 비안(備案) 전 조사 (상해 지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07 생생러시아

-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 개관 (마명원 변호사)

10 주목! 이 판례

-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5다 24981 판결)

13 최신법령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세제완화 (1)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세제완화 (2)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14 지평소식

- 중국 '문강 법률사무소' 장지국 대표변호사, 본사 방문
- 이병래 변호사, UC Berkeley 유학
- 문성호 미국변호사, UCLA Visiting Jurist Program 참여
- 이소영 변호사, '저작권 아카데미 음악산업인 과정' 강의
- 박성철 변호사, 제헌절 특집 '원음방송' 출연

법무법인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받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판정 이후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를 재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 받은 제품을 수출한 기업이 M&A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구조조정을 할 경우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이 구조조정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반덤핑/상계 관세 재심이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재심 제도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I.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절차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의 조사과정은, ①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예비조사, ②상무부 예비조사, ③상무부

최종조사, ④무역위원회 최종조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에서 관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할 경우 상무부의 조사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이나 상무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에서 부정적인 판정{0% 또는 미소 마진(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미소 마진율은 각각 1%와 2%입니다) 이하}이 내려질 경우, 조사절차는 종료됩니다(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이하 'The Act') Section 703(b)(4)(A), Section 733(b)(3)).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①미소 마진(margin)을 초과하는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예비관세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②0% 또는 미소 마진을 받을 경우에도 조사는 종료되지 않고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최종조사를 받게 되나, 다만 최종판정 결과 관세부과명령을 할 때까지 예비관세 등의 의무는 면제됩니다(19 C.F.R. 351.204 (e)(2)).

미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모든 업체를 조사하여 각 업체마다 조사결과에 따른 반덤핑/상계 관세 마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수가 많아서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출량이 가장 큰 업체를 선정하거나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The Act Section 777A(c), Section 777A(e)). 이 때에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조사에 참가한 업체들의 마진 중 미소 마진 이하의 것을 제외한 평균치(이하 'All Others Rate')를 적용합니다.

II. 재심 제도

1. 정기적인 재심

미 상무부는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이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달의 1년 후 같은 달 (Anniversary Month)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기적인 재심(Periodic Reviews, 이하 '연례재심')을 수행합니다(The Act Section 751(a)(1)).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미국 국내의 이해관계자와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을 받은 자 및 해당국가의 정부 등이 포함됩니다(19 C.F.R. 351.213 (b)).

한편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이 발동된 후 매 5년마다,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심(Sunset Reviews, 이하 '일몰재심')을 합니다(The Act Section 751(c)(1)).

2. 상황변동재심

정기적인 재심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반덤핑/상계 관세 명령을 둘러싼 상황이 변화하여 재심의 필요성이 있음(기존의 명령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료 또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미 상무부 또는 무역위원회에 상황변동에 근거한 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이하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The Act Section 751(b)(1)).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는 조사대상자와 그가 속한 나라의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자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The Act Section 771(9)). 한편 '충분히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덤핑/상계 관세 명령의 변경을 요구하는 자, 즉 재심 신청자가 부담합니다(The Act Section 751(b)(3)). 다만, 미 상무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판정 후 24개월 이내에는 상황변동재심을 하지 않습니다(19 C.F.R. 351.216(c)).

3. 기업의 구조조정시 상황변동재심의 영향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받은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M&A 기타 중대한 구조조정을 할 경우 그 전의 회사와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반덤핑/상계 관세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변동 후 회사가 그 전의 회사와 동일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기존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계속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회사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동 후 회사는 상계관세/반덤핑관세 조사절차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All Others Rate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변동 전 회사는 미소 마진 이하의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황변동재심 이후부터는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황변동재심이 아니더라도, 연례재심 또는 일몰재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Ⅲ. 문제된 사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된 사례 중 대표적으로 주식양수도 및 상호변경과 관련한 케이스와 미 상무부의 판단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미 상무부는 1999년 7월 27일 대한민국 철강회사들의 대미 수출용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 인천제철의 마진은 0%, All Others Rate는 12.12%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삼미제철을 포함하여 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12.12%의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제철과 삼미제철에 각각 2.65%, 59.30%의 상계관세 마진을 판정하였습니다. 그 후 인천제철은 2000년 12월 6일 삼미제철의 주식 68.4%를 양수하여 그 최대주주가 되었고, 인천제철은 INI스틸로, 삼미제철은 BNG스틸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INI스틸(구 인천제철)은 상호변경으로 All Others Rate를 적용받을 위험에 처하자, 2001년 8월 6일 인천제철에 대한 반덤핑 마진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재심의 주된 쟁점은 상호변경에 대한 것이었으나, 미 상무부는 부수적으로

INI스틸이 삼미제철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그 전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상계관세와 관련한 상황변동재심에서는 주식 양도(최대주주 변경) 후의 삼미제철을 그 전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동일인 판단 기준('The Same Person Test')

(1) 주식양수도 관련 INI스틸(구 인천제철)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상황변동재심에서, 미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INI스틸이 삼미제철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도 이들을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 이전의 인천제철에 대한 덤핑 마진을 그 후에도 계속하여 INI스틸에게 적용하였습니다.

- ① 흡수합병이 아닌 주식양수도이므로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유지되고 있음
- ② 두 회사간 이사 겸임은 한 명에 불과하고 비상근이사임
- ③ 지분양수 후 INI스틸에서 삼미제철로 이직한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함
- ④ INI스틸의 생산 설비, 생산 능력, 생산 라인, 인력 조직에 변동이 없음
- ⑤ INI스틸이 지분양수 후 삼미제철의 생산 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

BNG스틸(구 삼미제철)의 상계관세에 대한 상황변동재심에서는 미 상무부는 ① 상호 등 기존 사업조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총괄적인 사업 운영 방식의 연속성, ② 생산 설비의 연속성, ③ 자산과 채

무의 연속성, ④ 인적 구성의 유지 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BNG스틸은 (i) 총괄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 이전과 동일하고, (ii) 상호도 동일하며, (iii) 생산설비의 변동이 없고, (iv) 자산과 채무의 내역에도 변동이 없으며, (v) 인력 조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INI스틸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호 변경 관련

인천제철에서 INI스틸로의 상호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미 상무부는 ① 경영진의 변동(Change in Management), ② 생산설비의 변동(Change in Production Facilities), ③ 공급자 관계의 변동(Change in Supplier Relationships), ④ 소비자 관계의 변동(Change in Customer Base)을 동일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INI스틸은 조사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사업 조직(Organizational Structure), 경영진(Senior Management), 생산 설비, 공급자와의 관계, 소비자의 본질적인 변동이 없으므로, 인천제철과 동일인으로 판단 받았습니다.

(3) 종합적인 고려의 필요성

미 상무부는 주식양수 전후의 동일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안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상무부는 상호변경 전후의 동일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위에 예시한 요소에 한정하거나, 그것을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여기지는 아니하며, 변동 후의 경영방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

니다. 즉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상황변동 이전과 동일한 사업조직으로서 운영될 경우 동일 회사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는 주식양수 전후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시사점

일반적으로 상황변동재심이 문제되는 사유로는 상호의 변경이나 주소의 변경과 같이 미국 세관의 관세 예치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합병, 주식양수도, 자산·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나 회사의 조직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조직변경 전과 동일인임을 인정받았으나, 미국 내 경쟁업체들이 상황변동재심을 신청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입증을 위해서는, 상호, 사업 조직과 운영방식, 생산설비, 생산 능력,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자산 및 채무 등의 주요한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M&A 상대회사를 심사할 때에는 반덤핑/상계 관세의 조사 대상이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려라 중국)

부동산 외상투자 시 비안(備案) 전 조사



법무법인 지평 상해 지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중국 상무부는 2008년 7월 1일 <상무부 외상투자방지산업 비안사업 관련 통지(商务部关于做好外商投资房地产业备案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외국자본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시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에 대한 대조조사 의무를 성급 상무기관에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이 <부동산에 대한 외상직접투자기업의 심사와 감독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할 것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规范外商直接投资房地产企业审批和监管的通知)>와 2007년 11월 상무부가 <외상투자 부동산 기업의 비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外商投资房地产企业备案有关问题的通知)>를 반포하여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설립, 증자 및 인수합병 시 지방 상무기관에서 비준 후 관련 신청서류, 비준문서 및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사본 등을 상무부에 비안(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큰 폭의 수정입니다.

사실 지난 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상무부에서 공개한 부동산기업 및 프로젝트 리스트 중 베이징과 상하이 등과 같은 1급 도시에 비하여 2급, 3급 도시의 부동산투자가 더욱 많습니다.

이는 2급, 3급 도시에서 프로젝트 심사비준이 쉽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부서의 의도적인 투자조정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비안 실행은 중국부동산에 대한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중국 상무부로서는 엄청난 행정적 업무 부담을 가중하였으며, 행정업무 비효율은 외국투자자본의 부동산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안서류에 대한 엄격한 대조조사

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 향상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동 통지를 제정하였으며, 외상투자법률법규, 부동산 관련 거시적 조정 조치 그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급 상무기관이 성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물소유권, 프로젝트회사 원칙 부합여부, 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례(5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등에 대한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성급 인민정부 판공청과 성급 상무 주관부서가 날인한 <외상 투자방지산업비안표 (外商投资房地产业备案表)>를 상무부에 송부하여 비안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급 상무기관의 대조조사 권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5개에서 10개의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무분별 선별하여 상무부에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후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외환등기 취소 등 조치를 취하며, 성급 상무기관이 2차례 이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보비평하고, 정한 기간 내 시정을 명하되 만약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권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상무부의 권한을 하급 상무기관에 위임한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고삐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성급 상무기관이 비안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갖게 됨으로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이는 형식상 권한을 성급 상무기관에 위임하였을 따름이며, 선별검색 등 조치는 오히려 성급 상무기관을 감독관리 하는 권한이 강화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생생 러시아)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 개관



법무법인 지평 마명원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러시아 연방 경쟁보호법(the Federal Law On Protection of Competition, 이하 '경쟁보호법')은 2006년 7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쟁보호법은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the Federal Antimonopoly Authority, 이하 '반독점청')이 관할합니다.

경쟁보호법은 상품 및 금융시장에 적용되고 외국투자자¹에 대해서는 다음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¹ 경쟁보호법은 러시아연방의 영토 바깥에서 러시아인(또는 기관)과 외국인(또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또는 합의)이 (i)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위치한 기본 생산설비 및/또는 무형자산 또는 러시아회사의 주식(지분), 러시아 경제주체의 권리 취득에 관한 것이고, (ii)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 ② 부당공동행위 제한
- ③ 정부 보조금 등 지원행위 규제
- ④ 회사설립, M&A 등 기업결합 규제
- ⑤ 공공부문 입찰 관련 규제
- 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자(이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 내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데, 경쟁보호법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아닌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게 되나 그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함

니다.

경쟁보호법상 동일 시장 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시장점유율이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반독점청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시장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반독점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써 법적 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35% 미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경우에도 경쟁보호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5조 제2항).

한편 금융기관(여신기관 제외)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여신기관의 경우는 (연방) 정부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은 (i) 러시아 연방 내 동일 상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ii) 러시아 연방 내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7항).

반독점청이 시장점유율을 산출할 때에는 하나의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속한 동일인 관련집단 전체의 점유율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동일인 관련 집단에는 지분 소유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 지배구조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자연인, 법인, 단체가 포함됩니다.

경쟁보호법은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라는 개념 외에 “집단적인 지배적 지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이하 다른 사업자와 합하여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거나 5 이하 사업자와 합하여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8% 미만인 사업자가 한 명이 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3항).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제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0조 제1항).

- ① (시장가격보다 높은 또는 낮은) 부당가격의 설정 및/또는 유지행위
- ②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재화공급 중단행위
- ③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불평등한 지위에 처하게 만드는 조건(차별적 조건) 형성행위
- ④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계약목적과 상관없는 의무부과 행위
- ⑤ 수요가 있는 상품의 생산중단 또는 감축행위

- ⑥ 부당한 계약체결 거절행위
- ⑦ 경제적·기술적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설정행위
- ⑧ 차별적인 조건설정행위
- ⑨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시장 탈퇴에 대한 방해 행위
- ⑩ 법령에 의해 규정된 가격설정 방식 (pricing rules)의 위반행위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위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제한행위로 인하여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경쟁제한적인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1), 2), 3), 5), 6), 7), 10)을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3. 부당공동행위 제한

경쟁보호법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목적으로 하는 약정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 가격, 할인, 추가지급 또는 할증의 설정·유지
- 입찰가격의 상승,감액 또는 유지
-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상품범위 또는 구매자·수요자의 구성에 따른 시장구분
- 경제적·기술적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체결 거절
-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계약목적과 상관없는 조건부과
- 경제적·기술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상품에 대해 다른 가격설

정

- 수요가 있는 상품의 생산중단 또는 감축
- 시장진입 또는 시장탈퇴 제한
- 경쟁제한적인 단체 가입조건의 설정

경쟁보호법은 그 밖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모든 종류의 약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일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고 다른 사업자가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Vertical Agreements)은 허용하되, 각 사업자의 각 시장 내 점유율은 20%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약정은 프랜차이즈 계약이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제12조).

한편, 경쟁제한약정의 경우에도 당해 약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경쟁제한성보다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연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제안에 따라 경쟁보호법상 허용되는 계약유형, 허용되지 않는 거래조건 등을 정의하고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쟁보호법은 동일 기업집단 내 속하지 않는 제3자(자연인,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포함)가 사업자 행위를 조정하여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HLG](#)

(주목 이 판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업무상배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5다 24981 판결
- 사 건 명: 감자대금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김우중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코리아(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필코리아리미티드', 이하 '피고') 발행 주식 3,779,127주를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피고와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 운영협의회(이하 '금융기관협의회')'는 "김우중이 위 주식을 대우에 증여하도록 한 후, 피고가 위 주식을 소각하면 대우가 그 소각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차입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힐튼호텔을 매각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위 주식을 유상소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금융기관협의회는 "소각대상 주식을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우전자에 각 차입금채무액 비율에 따라 분산증여하고, 위 3개 회사의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21일 김우중씨 소유의 위 주식은 3개 회사에 분산증여 되었는데, 그 중 대우자동차에 증여된 것은 1,922,755주(이하 '이 사건

주식')입니다.

피고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통지 받고, 2000년 10월 26일 위 3개 회사가 주주로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유상감자(이익소각) 결의를 하였는데, 감자절차상 채권자 이의절차는 2000년 11월 27일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00년 11월 30일 대우자동차(즉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 정리회사 대우자동차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급기한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인 2000년 12월 27일 피고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에게 "피고가 대우증권으로부터 1999년 8월 18일 배서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우자동차 발행의 약속어음 원금 129억원과 만기일 이후의 지연이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는 다음 날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에 도달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임의소각의 의의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와 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가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그리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정리채권자가.....(중략)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계가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첫번째 쟁점, 즉 '임의소각의 효력 및 소각대금채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의소각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2) 임의소각의 의의

상법상 주식소각은 크게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소각(감자소각)'과 '이익으로 하는 소각(이익소각)'으로 구분됩니다. 이익소각은 다시 '상환주식의 상환', '정관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이익소각',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주식소각은 '소각의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뉘기도 하고, '소각에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강제소각이란 회사가 소각 대상 주식의 소

유자인 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의소각이란 회사가 주주의 동의 하에 대상 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하여 이를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원고의 주장과 원심 판결의 판단

(1) 원고(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의 대우자동차)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유상감자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소각은 임의소각으로서 ① 피고가 소각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소각대상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실효시킨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② 피고가 소각대상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주권을 교부 받은 때[이 사건 주식 중 1,922,727주의 경우에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가 주권을 피고에게 공탁한 2005년 1월 6일, 나머지 28주의 경우에는 피고가 주권을 교부 받은 2000년 11월 28일]에 주식소각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의 판단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년 3월 30일 선고 2004나 2054 판결)은 "이 사건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주권을 교부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채권자 이익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년 11월 28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소각대금채권 역시 이때 발생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상 판결의 판단 및 그 의미

먼저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1992년 4월 14일 선고 90다카 22698 판결 등).

나아가 대법원은 **‘주식소각대금채권 발생시기’**에 관해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하고, 다만 그때까지 주주로부터 회사에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주식소각대금청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동시이행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정리회사 대우자동차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는 달리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와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 절차의 완료 요건이 갖추어진 회사채권자 이익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년 11월 28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상 판결은 “원심 판결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지만, ‘소각대금채권 발생시기는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와 같다’는 판단은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다만 대상 판결은 ‘상계의 효력’을 긍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LG]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5다 24981 판결

(최신 법령)

1.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세제완화 (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31호)

개정전 소득세법의 경우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HLG](#)

■다운로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위한 세제완화 (2)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930호)

현행 법인세법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여기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149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5년 이상 임대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LG](#)

■다운로드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0947호)

2007년 8월 3일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위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HLG](#)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평소식)

중국 '문강 법률사무소' 장지국 대표변호사, 본사 방문

중국 문강 법률사무소(文康律師事務所)의 장지국 대표변호사님과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장진보 변호사님이 7월 24일 지평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문강 법률사무소는 중국 산둥성 청도에 있는 명망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문강이 있는 산둥성은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거래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번 방문은 문강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지평 간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자 마련 되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김이태 변호사, 정철 변호사, 문강 법률사무소 장지국 대표변호사, 조용환 대표변호사, 문강 법률사무소 장진보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지평소식)

이병래 변호사, UC Berkeley 유학



이병래 변호사는 8월 1일 유학을 위해 출국하였습니다.

이병래 변호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에서 LL.M과정으로 1년간 유학할 예정입니다. 

※E-mail : brlee@horizonlaw.com

문성호 미국변호사, UCLA Visiting Jurist Program 참여 위해 출국



문성호 미국변호사가 UCLA School of Law의 Visiting Jurist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 8월 1일 출국하였습니다.

문성호 미국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의 Visiting Jurist로서 1년간 '한미법 비교연구'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mail : shmoon@horizonlaw.com

(지평소식)

이소영 변호사, '제 4 기 저작권 아카데미 음악산업인 과정' 강의



이소영 변호사는 지난 2008. 7. 15 ~ 7. 16 동안 개최된 '제4기 저작권 아카데미 음악산업인 과정'에서 '저작권 계약 실무 강좌'를 강의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음악산업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상 필요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고 분쟁을 사전예방하고자 마련 되었습니다. 

[과정 개요]

- 기간 : 2008. 7. 15(화) ~ 7. 16(수)
- 장소 : 저작권아카데미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박성철 변호사, 제헌절 특집 '원음방송' 출연



박성철 변호사는 7월 17일, 제헌절 특집으로 마련된 원음방송의 "손석춘의 오늘" 중 '목요초대석'에 출연하여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성철 변호사는 2007년 '헌법줄게 새법다오'라는 제목으로 18가지 테마로 엮은 헌법재판 이야기를 출간한 바 있으며, 원음방송에는 이 책의 저자로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박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책 제목에 대한 에피소드,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생각,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http://www.horizonlaw.com>

서울 본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